

서울특별시 성북구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용진 의원 대표발의)



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

서울특별시 성북구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용진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57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4년 2월 1일

발의자 : 강수진, 경수현, 고영옥, 김경이,
김육영, 박영섭, 소형준, 양순임,
이관우, 이용진, 이인순, 임현주,
정병기, 진선아

1. 제안이유

성북구의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안내센터 설치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,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관광안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의2)

나.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(안 제9조, 제12조, 제14조 ~ 제15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관광진흥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조치

다. 사전협의 : 문화체육과

라. 입법예고 : 2024. 2. 2. ~ 2024. 2. 6.

서울특별시 성북구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성북구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제6호 중 “성북관광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”을 “구청장이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”으로 한다.

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2(관광안내센터의 설치 및 운영) ① 구청장은 관광객에 대한 안내, 홍보 및 각종 편의의 제공을 위하여 관광안내센터(이하 “안내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

② 안내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과 명칭, 위치는 구청장이 정한다.

③ 안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지역 관광안내 및 홍보
2.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·관리 및 제공
3. 문화관광 행사, 전시 및 프로그램 운영
4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9조제5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12조제2호 중 “부적합하다고”를 “적합하지 않다고”로 한다.

제14조제3항 중 “개의회고”를 “개의회(開議)하고”로 한다.

제15조 단서 중 “그러하지 아니하다”를 “그렇지 않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조(관광진흥계획 등의 수립) ① (생략) ② 구청장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객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관광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. 1. ~ 5. (생략) 6. 그 밖에 <u>성북관광 경쟁력 향상</u> 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	제3조(관광진흥계획 등의 수립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5. (현행과 같음) 6. ----- <u>구청장이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</u> -----
<신설>	제5조의2(관광안내센터의 설치 및 운영) ① 구청장은 관광객에 대한 안내, 홍보 및 각종 편의의 제공을 위하여 관광안내센터(이하 “안내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 ② 안내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과 명칭, 위치는 구청장이 정한다. ③ 안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1. 지역 관광안내 및 홍보 2.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·관

	<u>리 및 제공</u> <u>3. 문화관광 행사, 전시 및 프로그램 운영</u> <u>4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u>
제9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.	제9조(기능) ----- -----.
1. ~ 4. (생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5. <u>기타</u> 관광발전 등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	5. <u>그 밖에</u> ----- ----- -----
제12조(위원의 위촉 해제) 구청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.	제12조(위원의 위촉 해제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<u>부적합하다고</u> 인정되는 경우	2. ----- -- <u>적합하지 않다고</u> ----- --
3. (생략)	3. (현행과 같음)
제14조(회의 및 의결) ①·② (생략)	제14조(회의 및 의결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<u>개의하고</u> 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	③ ----- ----- <u>개의(開議)</u> <u>하고</u> -----

결한다.	-----.
④ (생략)	④ (현행과 같음)
제15조(안건의 제출)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<u>그러하지 아니하다</u> .	제15조(안건의 제출) 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 -- <u>그렇지 않다</u> .